

정 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Hanon Systems

Contents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 3 장	사채
제 4 장	주주총회
제 5 장	이사
제 6 장	이사회회의 회의
제 7 장	감사위원회
제 8 장	회계
제 9 장	보칙
부 칙	(2013. 03. 12)
부 칙	(2014. 03. 12)
부 칙	(2015. 03. 30)
부 칙	(2015. 12. 22)
부 칙	(2020. 03. 25)
부 칙	(2021. 03. 29)
부 칙	(2025. 01. 03)
부 칙	(2025. 03. 31)
부 칙	(2025. 09. 23)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의 명칭은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이다. 영문으로는 Hanon Systems 이라고 한다 (이하 "회사").

제 2 조 (목 적)

본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및 공급,
2. 전자전기 기계기구용 및 기타 산업용 부품, 시스템의 제조, 판매 및 공급,
3. 수출입 및 교역,
4. 위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 사항, 사업 및 활동

제 3 조 (본점 및 지점)

본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대전시에 둔다. 지점, 출장소 또는 기타 영업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 4 조 (공 고)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onsystem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 5 조 (수권주식)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십오억주로 한다.

제 6 조 (발행주식)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액면가 일만원으로 구만주이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와 액면가)

본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일종이며 각 주식은 일백원의 액면가를 갖는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주식에 대한 납입)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은 (1) 회사가 지정하는 일개 또는 수개의 은행에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2) 이사회가 지정한 독립 감정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당해 주식금액이 상당하는 현금가치를 지닌 현물(예컨대, 토지, 건물, 기계 및 또는 장비)로써 하여야 한다. 완납된 주식만이 발행될 수 있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2 조 (기준일)

1. (삭제)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자 또는 그 국내외 합작투자자에게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3 조의 2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3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나)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다) 제가)호와 제나)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15년 내의 기간 중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사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및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삭제)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및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삭제)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대한 준용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주주총회의 유형과 시기)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로 하거나 또는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된다.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된다.

제 18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당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주주총회의 장소)

모든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제 20 조 (주주총회의 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회의일로부터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국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주주총회의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발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의 자회사, 또는 이 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가 각각 혹은 누계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의 3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타인의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 대리투표)

1. 각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각주에 대하여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주주총회에서는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2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의사록)

매 주주총회의 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동 의사록은 회의에 참석한 의장 및 모든 이사들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하며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제 29 조 (정원, 자격, 보수 및 선임방법)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이사는 재직의 조건 또는 자격으로서 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이사의 보수는 매년 본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제27조에 규정된 정족수와 의결조건에 따른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임원퇴직금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 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각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그 임기는 그들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된다.
2. (삭제)

제 31 조 (결 원)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 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도 또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무 및 책임)

1. 이사회는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이사회 의장은 모든 이사회 회의의 주재한다.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하거나 어느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연속 재직 기간이 가장 오래된 순으로 정해지는 이사가 의장이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의 2 (대표이사 등)

1.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의 3 (대표이사의 직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직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나)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다)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기타 회사의 안전 및 보건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 33 조 (삭제)

제 34 조 (삭제)



제 6 장 이사회 회의

제 35 조 (소 집)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길 때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6 조 (회의의 통지)

1. 이사회 회의는 회의일 2일 이전에 각 이사에 대해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써 통지되어야 한다.
2. 이사들은 회의에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모든 이사들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항에 기재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7 조 (회의의 장소)

모든 이사회 장소는 회사의 본점 또는 그 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이 정하는 기타 장소로 한다.

제 38 조 (결의의 채택)

1. 재직중인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이사회가 그 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법률 또는 정관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이사들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삭제)

제 39 조 (삭제)

제 40 조 (의사록)

매 이사회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은 회의에 참석한 의장, 이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0 조의 2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나) 감사위원회
 - 다) 기타 이사회가 설치할 것을 결의한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감사위원회

제 40 조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8.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4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5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 계

제 41 조 (회계기간)

본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2 조 (회계장부 및 기록)

1. 회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한국 회계관행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방침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최종 재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3. 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2항의 각호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삭제)
6. (삭제)
7. 대표이사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4 조 (손익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 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자본결손의 보전
- 나) 법정준비금의 적립
- 다) 배당금
- 라) 임의적립금
- 마) 기타의 이익잉여금

제 45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 (삭제)



제 45 조의 3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9 장 보칙

제 46 조 (세 칙)

본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세칙 및 기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7 조 (상법 등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 또는 한국 상법 및 기타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 칙 (2013. 3. 12)

이 정관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2조 제4항, 제40조의2 제1항 가목, 나목, 제40조의3 내지 제40조의5, 제42조 제2항 (다목제외), 제4항, 제43조의 신설 또는 수정부분 및 제29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36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40조의 삭제 부분은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2)

이 정관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30)

1. 본 개정정관은 VIHI, LLC, Visteon Corporation, 한앤코오토홀딩스 유한회사 및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사이에서 2014년 12월 17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가) 위 거래종결이 본 정관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정관 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나)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본 정관 개정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개정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제1항의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전 취임한 이사가 전부 사임할 때까지는 회사의 이사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부 칙 (2015. 12. 22)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7조는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 공고기간 만료 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 3. 25)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1. 3. 29)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5호는 2020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3)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5. 3. 31)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5. 9. 23)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